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39
----------	-------

발의연월일 : 2025. 11. 12.

발 의 자 : 정혜경 · 전종덕 · 손 솔
최혁진 · 민병덕 · 윤종오
박해철 · 용혜인 · 이용우
한창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수집·운반의 경우 6개월, 소각·매립의 경우 3년, 그 외는 2년) 이내에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해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구조적 허점으로 인해 변경사업계획서 제출이 반복되면 허가신청 기한이 사실상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민 불편과 지역사회의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 신청 기간의 기산점은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 통일하여 행정상의 혼동을 방지하고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법률 제 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전단 중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를 “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최초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④ ~ ⑰ (생 략)	----- ----- -----. ④ ~ ⑰ (현행과 같음)
---	---